

#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희용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49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31.

발의자 : 정희용 · 최수진 · 김선교  
조지연 · 김상욱 · 박준태  
박덕흠 · 김성원 · 박충권  
김상훈 · 김소희 의원  
(11인)

### 제안이유

최근 첨단기술과 연계한 수직농장 등이 등장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거나 2·3차 산업과 연계한 농업의 융복합산업화 등 농업인의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, 농업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소득을 증대하는 등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농업생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 중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개량시설 등 일부만 농지 위 설치를 허용하여 농업·농촌의 다양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, 농지의 임대차·위탁경영 촉진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·집단화를 제고할 수 있는 농지 이용증진사업의 시행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. 또한, 농촌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농지전용 허가 절차가 복잡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다양한 형태의 농지이용증진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국적 확산을 유도함으로써 농업의 규모화·집단화를 촉진하고 농지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.

## 주요내용

- 가. 농지 전용 없이 농지 위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14조).
- 나.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에 시·도지사를 추가함(안 제15조 등).
- 다. 농지전용허가 특례 적용 범위에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한 시설을 추가함(안 제43조).

##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1절에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4조(농지 이용 시설) ①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개량시설, 같은 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기타 농업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·협의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개량시설,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기타 농업용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·보전 및 농촌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”을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전단 중 “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”을 “시·도지사

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”으로, “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라 한다)”를 “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라 한다) 또는 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시·군·구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”를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 외”로 한다.  
제18조제1항 중 “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”을 “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”을 “시·도지사는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“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”를 “시·도 농업·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”로 한다.

제43조 중 “농지를 전용하려면”을 “농지 또는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전용하려는 경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<p>제14조(농지 이용 시설) ① 제2조  <u>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개량시설, 같은 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기타 농업용 시설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개량시설, 농축산물 생산시설 및 기타 농업용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·보전 및 농촌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·군·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.</p>



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.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 외의 사업시행자가 농지 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③ · ④ (생략)

제18조(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) ①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)에는

다) 또는 시·군·구 농업·농  
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(이하  
“시·군·구 농업·농촌 및 식품  
산업정책심의회”라 한다)-----

②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 외-----

###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
제18조(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 계획의 고시와 효력) ① 시·도  
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  
구청장-----

<p>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.</p>	----- ----- ----- -----.
<p>② ~ ④ (생략)</p>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p>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</u>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.</p>	<p>제28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) ① <u>시 · 도지사는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(생략)</p>	② (현행과 같음)
<p>제30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) ① 시 · 도지사는 「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15조에 따른 시 · 도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(이하 “시 · 도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.</p>	<p>제30조(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) ① -----<u>시 · 도 농업 ·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</u>의----- ----- -----.</p>
<p>② ~ ④ (생략)</p>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<p>제43조(농지전용허가의 특례)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</p>	제43조(농지전용허가의 특례) --- -----

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.

-----  
-----농지  
또는 「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전용하려는 경우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  
-----.